

제2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1.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  
전문위원 최 광 호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1 - 15
- 나. 발 의 자 : 정정희 의원 외 8명
- 다. 발의일자 : 2021년 2월 18일
- 라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25일

## 2. 개정이유

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,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비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- 다. 운영 위탁기준 정비(안 제5조)
- 라.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7조 ~ 안 제17조의5)
  - 위원회 기능·구성·임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 - 위원회 위·해촉에 관한 사항 등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 제4조, 제30조

나. 협조부서 : 교육청소년과

다. 입법예고(2021.2.19.~2021.2.24.)결과: 의견있음(“별첨” 참고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-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, 심의 기능을 가진 ‘운영위원회’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(안 제3조)
  - 용어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1) 및 관련 조문 정의 내용을 반영함
-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  - 구청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“구청장의 책무” 신설
- 운영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 명확화(안 제5조제2항)
  - 도서관 운영을 비영리 외부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함

1)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서관”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·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”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
○ 도서관 운영위원회 신설(제5장, 안 제17조 ~ 안 제17조의5)

- 제5장에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위원회 신설

○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심의사항 규정(안 제17조)

-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

○ 위원회의 구성(안 제17조의2)

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내·외 인사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, 특정 성별(10분의 6) 초과를 제한

○ 위원 해촉 규정(안 제17조의3)

- 위원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해촉 사유 등 명시

○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7조의4)

-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원칙, 업무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,
-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토록 규정

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8개<sup>2)</sup>의 강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안 제5장 20조를 제1장을 신설하여 제6장 20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
2) 구립도서관(8개): 가양, 강서영어, 곰달래, 길꽃어린이, 꿈꾸는어린이, 등빛, 우장산숲속, 푸른들청소년 도서관

- 신설되는 제5장(안 17조 ~ 안 17조의5)은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으로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구립도서관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.
  
- 다만, 이번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2021.2.19.~2.24.) 기간 중에 강서 구립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**□ 도서관법**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0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 3. 25.>